



보도 일시	(지 면) 2. 2. (목) 조간 (인터넷) 2. 1.(수) 12:00	-
-------	--	---

담당 부서	소상공인정책관	책임자	과장	이상천 (044-204-7290)
	소상공인성장촉진과	담당자	사무관	이청수 (044-204-7854)
			사무관	박혜정 (044-204-7285)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투자유치형 연계(매칭)융자 프로그램 최초 시행

- '23년 기업가형 소상공인 연계(매칭)융자 운영사 모집(2.2~2.20) -

- 민간 투자사가 선(先) 투자시 정책자금을 최대 5배까지 후(後) 연계(매칭)하여 지원하는 투자유치형 연계(매칭)융자 사업 최초로 실시
- 성장을 지향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투자 실적 및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운영사 우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창업기획자, 초기전문 벤처투자사(VC) 등 투자·보육 역량을 갖춘 투자사를 대상으로 ‘기업가형 소상공인\* 연계(매칭)융자(이하 연계(매칭)융자)’ 운영사를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모집한다.

\* 기업가 정신, 장인 정신 및 창의성을 기반으로 혁신적 사업모형(모델)을 창출하고 성장을 지향하는 소상공인

연계(매칭)융자 사업은 중소기업부가 지정한 운영사가 역량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에게 선 투자한 후 추천하면, 중소기업부가 별도의 신용평가 없이 정책자금을 연계(매칭)하여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3년 신설되었다.

최근 나다움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확산되면서 30대 이하 기회형 창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2년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1차 심사

(오디션) 통과기업 34개사 중 8개사가 투자유치 사례가 있는 등 중소벤처 기업부는 총 400억원 투자연계(매칭)형 정책자금 운용을 통해 이들을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육성하겠다는 복안이다.

\* ('19년) 15.3% → ('20년) 19.9% → ('21년) 21.2%

신청자격은 소상공인 투자실적 보유 등 관련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금융투자업자\*나 보육 투자전문기관\*\*라면 신청할 수 있다.

\* 자본시장법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상 등록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와 온라인 투자연계금융업자 등

\*\* 소상공인 지원기관으로 창업기획자,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LLC 등 포함), 기타(기술 지주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선정된 운영사는 배정된 정책자금을 활용하여 기업가형 소상공인에 대한 연계(매칭)융자 추천 및 보육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운영사에 추천받은 기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민간운영사로부터 투자받은 자금의 최대 5배(최대 5억원 이내)까지를 연계(매칭)융자로 지원하게 된다.

이영 장관은 “연계(매칭)융자는 사업자의 신용도와 무관하게 민간 투자사의 투자와 평가만으로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최초의 프로그램”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혁신형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고부가 서비스 산업과 창조적 신 제조업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관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www.semas.or.kr) 또는 소상공인마당 누리집(www.sbiz.or.kr) 공지사항 내 공고를 참고하여 전자우편(strong@semas.or.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사업개요**

- (목적)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여 유망소상공인을 선별하면 정부가 신용도와 무관하게 정책자금을 매칭지원하여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
- (내용) 민간투자사(운영사)가 성장잠재력이 높은 유망 소상공인에게 先 투자 시 정책자금(융자)를 최대 5배까지 後 매칭 지원
- (모집규모) ○개 기관 (총 운용가능 자금 400억원)

□ **신청자격 및 운영사 역할**

- (신청자격) 소상공인 투자실적 보유 등 관련 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① 금융투자업자** 또는 **② 보육투자 전문기관**

\* 주관기관은 컨소시엄(최대 1개 기관)방식으로 협력기관과 사업 신청가능

① 금융투자업자	② 소상공인 보육·투자 기관
- 자본시장법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상 등록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	- 소상공인 지원기관으로 창업기획자, 벤처캐피탈(LLC 등 포함), 기타(기술지주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 (신청예산) 1개 기관당 최대 400억원 한도 내 자율 신청
- (필수 기본요건) 전문가, 투자재원 등을 보유하고 멘토링·보육 등 연계 가능한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는 별도의 조직·사업
  - \* 정부지원사업 운영 경험 또는 자체 운영 사업이 있는 기관(업)을 우대하며, 창업 인프라는 소진공 보유 인프라(소상공인전용교육장 등) 공동 지원
- (운영사 역할) 운영사별로 할당된 규모에 따라 기업가형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집행금액의 추천권 부여
  - \* 先 투자 인증서, 투자 심사시 자체적으로 작성한 기업평가서 등 필수서류 제출 必
  - \* (소진공) 소상공인에 대한 매칭융자 지원규모는 운영사 신청규모(소상공인 지원 수, 선투자금액)에 따라 변동(운영사 투자금의 최대 5배까지 매칭융자 지원)